한화손보
Carrot

한화손보

캐롯 자동차보험
업무용

약관 이 약관은 보험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작성한 자료입니다.

확인필-제2026-자동차상품-약관01706C-전사(26.04.03~27.04.02) | **개정** 2026.05.16

Carrot 한화손보

GET IT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

한화손보 캐롯 모바일 앱을 만나보세요!

한화손보 캐롯 고객센터

1566-0300

www.carrotins.com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제작 자동차상품파트 / **제작일자** 2026.05.16

한화손보
Carrot

한화손보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

자동차보험 꼭 알아두세요

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을 의미합니다.

대인배상 I + 대물배상(2천만원)

구분		보상한도
대인배상 I	사망	1.5억원
	부상	3,000만원
	후유장애	1.5억원
대물배상		2,000만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지연 등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한 경우, 자배법 제48조 3항 1호에 근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꼭 유의하세요!

알아두실 사항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대인 I	대물	대인 I	대인 I I	대물	대인 I	대물
10일이내	1만원	5천원	3만원	3만원	5천원	6천원	3천원
10일초과 1일당	4천원	2천원	8천원	8천원	2천원	1천2백원	6백원
최고한도	60만원	3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자동차보험 가입을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계약 시 청약서, 상품설명서 및 보험증권을 받으셨나요?
아래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범위와 연령에 대해 확인하셨나요?

계약관련 서류에 자필서명을 하셨나요?

차량모델, 차량번호, 추가 장착 부속품 등이 정확히 기재 되어 있나요?

고객님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정확하게 기재 되어 있나요?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와 보상 받을 수 없는 사고에 대해 확인 하셨나요?

주요담보 별 가입금액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특약에 관한 사항은 확인하셨나요?

※ ECO 전자문서 사용약정 특별약관에 가입하신 경우, 전자매체(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의 메시지)를 통해 증권/약관 등 계약관련 서류를 드립니다.

아래의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1. 다른 보험회사에 동일차량으로 중복 계약 체결 유무
2. 피보험자동차 및 실소유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청약서 기재 사항

알아두실 사항

보험가입시 청약 내용은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보험기간 중 변경사항은 없으신가요?

보험기간 중 계약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연락주세요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자동차보험 주요 우편물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변경된 주소지와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존 자동차를 팔고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

새로 구입한 자동차와 기존 자동차를 대체하셔야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가능 범위 이외의 분이 운전하는 경우

추가로 운전하시려는 분의 연령/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장착한 부속품이 있는 경우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등 추가 장착한 부속품을 보상 받기 위해서는 보험 회사에 별도 통지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르거나 혹은 변경해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 영업가족 또는 고객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손보 캐롯 고객상담센터 1566-0300



알아두실 사항

위와 같은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받지 못할수도 있으며, 변경사항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님 사고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01 **즉시 차량을 멈추고 부상자를 구호해주세요**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부상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필요시 응급처치를 해주세요)

02 **사고정황 증거를 확보해 주세요.**

사고현장 촬영 및 목격자를 확보해주세요. (연락처, 명함 등)
사고차량 위치를 도로상에 표시해주세요. (스프레이 등)
블랙박스를 장착하셨다면, 영상을 확보해 주세요.

03 **교통질서를 회복해주세요.**

2차사고 예방,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해 주세요.

04 **보험회사 및 경찰서에 신고해 주세요.**

보험가입자의 성명, 차량번호, 운전자의 성명, 사고일자, 장소,
사고내용 및 입원병원 등을 알려주세요.

한화손보 캐롯 고객상담센터 1566-0300

사고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접수 및 보상담당자 지정
사고상담 및 안내를 해드리며, 보상서비스 담당자를 지정해드립니다.

사고조사 및 피해사항 확인
피해자 또는 고객님을 만나 사고원인, 과실비율 등을 확인합니다.
치료과정 및 수리과정을 확인하고 합의금 등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보험금 결정 및 지급 후 종결안내
피해자와 합의하여 치료비,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해당내용은 고객님께 안내해 드립니다.
종결시 사고처리결과를 고객에게 최종안내해 드립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세부내용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 만기 시
유의하실 사항입니다

보험계약 만기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화손보 캐롯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의무보험 포함)을 가입한 차량의 보험계약이 만기(종료)될 경우 보험 만기 전 2회에 걸쳐 고객님에게 만기 사실을 이메일로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안내 시기	안내방법	안내대상
1차 안내	만료일 75일 – 30일전	이메일	기명피보험자
2차 안내	만료일 30일 – 10일전	이메일	기명피보험자

만기일 안내

※ ECO 전자문서 사용약정 특별약관에 따라 이메일로 만기 안내가 발송됩니다.
※ 보험기간 2개월 미만의 계약은 안내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구성을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은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형성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보통약관과 보통약관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선택이 가능한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약관

타인에 대한 배상

상대방이 다쳤을 때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상대방 차량 등의 손해



대물배상

고객님의 보상

고객님이 다쳤을 때



자기신체사고

고객님 차량 손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 차량에 의해 다쳤을 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별약관

- 운전가능자 제한 특별약관
- 보험료 할인 특별약관
- 고보장 특별약관
-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보상내용 등을 보충,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것으로 고객님이 원하는 특별약관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친 경우
대인배상 Ⅰ, Ⅱ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고객님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Ⅰ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으로서
자동차 보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강제)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및 지급한도

구분	보장내용	지급한도
사망	사망자 1인당 실제손해액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지급	최저 2천만원 – 최대 1억5천만원
부상	부상등급별 실제손해액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지급	50만원(14급) – 3천만원(1급)
후유장애	장애등급별 실제손해액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호비)지급	1천만원(14급) – 1억5천만원(1급)

대인배상 Ⅱ

대인배상 Ⅱ 는 계약체결 시 정한 가입금액을 한도로「대인배상 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Ⅰ 과 같습니다.

선택 특별약관으로 더 나은 보장받기

사망/중과실/중상해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까지 보장 받으세요

해당 자동차사고 시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과
관련된 법률비용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금
- 변호사 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
- 벌금비용 지원(스쿨존 및 대물 확대형)

상대방 차량/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님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최소 가입금액 2천만원)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강제) 보험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지급한도
대물배상	수리비용, 교환가액, 렌트비(대차료),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등 보상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2천만원 대물확대특약은 3/5/7천만원 또는 1/2/3/5/10/20억원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특별약관으로 더 나은 보장받기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차량과의 사고에 대비하세요

고액 수리비 지급이 예상되는 차량과의 사고 시 보상금액 한도 초과 걱정 없이 안심하시고 보상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물배상 가입금액 한도 증액



한화손보 캐롯 고객상담센터 1566-0300

고객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사고로 고객님 또는 고객님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사고 (공제액 없음) 인지 또는
상대방이 있는 쌍방사고 (공제액 존재) 인지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집니다.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신체에 발생한 상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의학적 소견(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 계약체결 시 정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별 보장내용 및 지급한도

구분	보장내용	지급한도
 **쌍방사고** (공재액 존재)	부상/후유장애 급수별 가입금액 한도 사망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손해액에서 공제액 차감 후 지급	1인당 한도적용
 **단독사고** (공재액 없음)	부상 상해등급(1-14급)별 한도 내 실제 치료비 사망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 정액 지급 장애 장애등급(1-14급)별 가입금액 정액 지급	

주) 공제액: 상대차량 대인배상 등 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주) 실제손해액: 약관상'대인배상 지급기준'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선택 특별약관으로 더 나은 보장받기

자기신체사고 부상 급수별 보장금액한도가
너무 낮아 불안하신가요 ?

부상 급수별 한도가 아닌 대인배상 지급 기준에
따른 실제 손해액(위자료+치료비)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고객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기차량손해

자동차 사고로 가입하신 자동차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보장내용

자기차량손해(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포함)는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침수,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손해와 차량의 도난(부분도난 제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

고객님 차량에 생긴 직접 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차량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해 드립니다.

가입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고객님이 부담하실 금액 = 보험금

※ 자기부담금: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

자기부담금 산정예시

〈예시조건〉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자기부담금 20%(최고한도 50만원) 가입시

손해액	손해액의 20%	자기부담금 최저 – 최고 한도	고객님 자기부담금
200만원	40만원	20만원 – 50만원	40만원
400만원	80만원		50만원(최고한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고객님께서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등에 의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차량 탑승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아니거나 고객님이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이면서 다음 중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면 무보험자동차로 봅니다.

1.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2. 대인배상 II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3. 고객님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담보 가입금액보다 낮은 대인배상 II(공제계약 포함)에 가입한 자동차
4. 뺑소니 자동차

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2억/5억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특별약관으로 더 나은 보장받기

다른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대비하세요

기명피보험자(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 시 대인Ⅱ, 대물, 자손 담보에 대하여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시 자동가입)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운전가능 범위/운전가능 연령 범위내 포함되어 있어야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 운전 가능한 다른자동차의 범위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주요 면책사항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꼭 참고하세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운전가능 연령/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어다 주는 행위를 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유상운송 면책)



자동차를 시험용으로 운행하거나 경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담보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16개 서비스 항목)

보험기간 중 총 6회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한
긴급 견인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요청하는 곳까지 30km 한도로 견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150km 한도)	·한도 초과시 고객님 실비 부담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
비상 급유	연료 소진으로 운행 불가 시 1일 1회, 3리터 한도로 급유 (LPG차량의 경우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	·보험기간 중 총 2회 한도 ·한도 초과 시 고객님 실비 부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는 견인 제공
배터리 충전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 배터리 충전 (배터리 교환 시 고객님 실비 부담)	·차량 Key 배터리, 연료전지 등은 해당되지 않음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는 견인 제공
타이어펑크 수리 및 교체 서비스	지면에 닿는 타이어 트레드 부분 (접지면)이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구멍이 뚫린 단순 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수리 서비스 제공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 차감)	·야간, 기상상황 등으로 펑크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자연마모로 인한 펑크 또는 찢어진 경우 ·기타 현장에서 수리가 곤란한 경우
	타이어 펑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예비 타이어로 교체 서비스 제공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잠금 장치 해제	자동차 열쇠를 분실하였거나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제공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 ·외산차량 또는 국산차량의 특수 잠금장치, 사이드에어백 장착 등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별도 업체를 통해 서비스 제공 가능 (다만, 추가비용은 고객님 실비 부담)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비
긴급 구난 서비스	도로 이탈 또는 장애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구난 서비스 제공	·별도의 구난 장비 필요시 발생비용은 고객님 부담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 보험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서비스 횟수를 총 3회 제공합니다.
※ 약관에서 정한 서비스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거나 고객님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각 서비스별 세부사항은 특별약관 본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과거 계약 및 사고자료의 통계를 바탕으로 하여 산출된 기본보험료에 개별 가입 피보험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기본보험료 × 특별약관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별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등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별약관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별약관 등을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 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 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를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 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방법

1. 운전자 연령이나 범위를 한정하여 가입
2.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 특별약관에 가입

알아두실 사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를 준수한 안전운행만이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과 우량할인·불량할증율의 할인과 더불어 보험료를 절약하는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고객권리 안내문

금융서비스의 이용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관련 금융서비스는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 3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화손보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 3자에 대한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한함으로서 금융회사의 업무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동의철회는 제한됩니다.

본인정보

본인정보의 활용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566-0300 / 홈페이지 www.hwgeneralins.com

※ 단, 신규거래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신청과 관련한 불편과 애로가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또는 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손해보험협회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02)316-047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금융센터 한화손보 준법감시인	(02) 3702-8500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케이트윈타워	(02) 3145-542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정보화전략실 정보보안팀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한화손보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고객상담센터 및 지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법 제35조)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주요정보 내용 등을 통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법 제38조)
고객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의 열람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정정 요구 및 정정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감위에 시정 요청 가능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신용평가회사(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NICE평가정보(주) 대표전화 02-2122-4000 / 홈페이지 www.niceinfo.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대표전화 1588-4753 / 홈페이지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대표전화 02-708-1000 / 홈페이지 www.koreacb.com**

상담 및 분쟁/범죄 신고센터 안내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손보 캐롯 고객상담센터 1566-03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여의도동) 한화금융센터 고객상담센터

금융감독원 133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화손보
www.hwgeneralins.com
Phone 02-316-0592
Fax 02-316-0593

금융감독원
www.fss.or.kr
Phone 1332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금융감독원
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524
Phone 1332 / 02-3145-5114

캐롯 자동차보험 업무용 약관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및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 교육 및 시험용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캐롯 자동차보험 업무용 보통약관 목차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 4

제1조(용어의 정의) ····· 4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 6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 7

제1장 배상책임 ····· 7
제1절 대인배상 I ····· 7
제3조(보상하는 손해) ····· 7
제4조(피보험자) ····· 7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7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 7
제6조(보상하는 손해) ····· 7
제7조(피보험자) ····· 8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8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 9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 9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9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 · 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 9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10
제1절 자기신체사고 ····· 10
제12조(보상하는 손해) ····· 10
제13조(피보험자) ····· 10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10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 10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11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11
제17조(보상하는 손해) ····· 11
제18조(피보험자) ····· 12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12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13
제3절 자기차량손해 ····· 13
제21조(보상하는 손해) ····· 13
제22조(피보험자) ····· 14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14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15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 16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 16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16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16
제27조(제출 서류) ····· 17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 17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 18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18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18
제31조(제출 서류) ····· 19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 19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 19
제33조(보험금의 분담) ····· 19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 20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20
제36조(합의 등의 협조 · 대행) ····· 20
제37조(공탁금의 대출) ····· 21

제4편 일반사항 ····· 21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 21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 21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21
제4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22
제41조(청약의 철회) ····· 22
제42조(보험기간) ····· 23
제43조(사고발생지역) ····· 23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23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 23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 23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 24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 24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 24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24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 25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 25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25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 해제) ····· 26
제52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26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27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 27

제4장 그 밖의 사항 ····· 28
제55조(약관의 해석) ····· 28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28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 28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 29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 29
제60조(분쟁의 조정) ····· 29
제61조(관할법원) ····· 29
제62조(준용규정) ····· 29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 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행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9. 음주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피보험자 :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인명보호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1)를 말합니다.
    다.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2)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3)

    (*1) **예** :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라이더자켓 · 팬츠 · 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
    (*2)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3)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 ·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8. 보험가액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19. 마약 · 약물운전 :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 새 부분품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에 따른 신부품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합니다.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 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 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나. 「대인배상 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 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납입할 보험료 = 기본 보험료 × 특약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별 요율 ×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구 분	내 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 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 I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 I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건설기계 등 동법 제2조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 I 」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 I 」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 I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 II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 I 」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와 자녀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인한 손해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8호, 제3항 제6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 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 Ⅱ」 : 「대인배상 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 · 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 · 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 · 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대인배상 Ⅰ」 : 「대인배상 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 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 · 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

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2)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제13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피보험자)의 「대인배상 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2. 제1호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1)

(*1)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8.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

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I」(**정부보장사업**(*1) 포함) 및 「대인배상 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업무상 재해 등)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다만, 제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정부보장사업**'이라 함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8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1)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1)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5.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에만 피보험자로 봅니다.

(*1) '**자동차 취급업자**'라 함은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자동차를 배송하는 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1. '지급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 I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1)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마.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1) **'정부보장사업'**이라 함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에서 정한 기준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1)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2)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3)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일방과실사고'**라 함은 쌍방과실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한 사고를 말합니다.
(*2)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예 : 외장부품의 코팅, 색상 등의 손상에 대한 도색, 판금으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 등)

(*3) **'품질인증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②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1. **다른 자동차**(*1)와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단, 전부도난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다른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말함)와 사고발생시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 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 중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제22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 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 · 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1)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1.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에서 정한 기준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에는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 가격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1)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1) '**중요한 부분**'이란 엔진, 미션, 캐빈, 적재함, 바디 및 전기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1)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4.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 시 사고 당사자 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실제 손해액에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하거나 대용품을 주는 것으로 보험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1)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에 종료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1)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1)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대인배상 I」,「대인배상 II」,「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3.「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4.「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

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7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험금 청구서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6. 배상의무자의「대인배상Ⅱ」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대인배상Ⅱ」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 시 말소 사실증명서			○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 시 이전서류		○	○		
전손사고 후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		○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

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31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Ⅰ · Ⅱ	대물배상
1.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 손해배상청구서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 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 Ⅰ · 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합의 등의 협조 · 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 · 절충 ·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 · 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2)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 · 우편 ·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보험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 · 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 · 사진 ·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청약의 철회) ① **일반금융소비자**(*1)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금융소비자**(*2)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1) **'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2) **'전문금융소비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④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⑥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5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

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보험기간
1. 원칙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기간을 유예할 경우 보험회사가 유예를 승인한 날부터 운행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만큼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을 연장합니다.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1)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3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기간 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또는 신청 이후 유예기간의 원인 사실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 유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 ·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 · 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

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간, 2종 · 3종화물자동차 간, 초소형 · 경 · 4종 화물자동차 간, 경 · 3종 승합자동차 간, 개인소유 1종 · 2종 · 3종 화물자동차 간 또는 개인소유 1종 · 2종 · 3종 승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text{기납입보험료 총액} \times \frac{\text{해당기간}}{\text{365(윤년 : 366)}}$$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 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2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보험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회사는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제1호 · 제2호 · 제4호 · 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 받은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 · 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 ·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제3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 · 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

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분쟁의 조정)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록 및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61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준용규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캐롯 자동차보험 업무용 특별약관 목차

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 ····· 32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32
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32
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33

제2편 운전가능자 제한 ····· 34

제1장 운전자 연령제한 ····· 34
1 운전자연령 만21/24/26/30/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34
2 운전자연령 만43/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34
제2장 운전자 범위제한 ····· 35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35
2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36
3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36
4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37

제3편 자기신체사고 보장 확대 ····· 38

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38

제4편 차량손해 보장 확대 ····· 39

1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 39
2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 40
3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 ····· 42
4 전기자동차 충전 중 사고 보상 특별약관 ····· 43
5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 43
6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 44

제5편 사고처리시 필요 비용지원 ····· 46

1 형사합의금 지원 특별약관 Ⅱ ····· 46
2 변호사선임비용 지원(경찰조사 포함) 특별약관 ····· 48
3 벌금비용 지원(스쿨존 및 대물 확대형) 특별약관 ····· 50

제6편 긴급출동 서비스 ····· 51

1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 51
1 – 1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 ····· 55
1 – 2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대형견인) ····· 55
2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서비스 특별약관 ····· 56
2 – 1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 ····· 58
2 – 2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대형견인) ····· 59
3 한화 중형화물 · 승합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 59
3 – 1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대형견인) ····· 61
4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친환경자동차) ····· 62
5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친환경자동차)Ⅱ ····· 63

제7편 기타 ····· 65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65

2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66
3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67
4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 67
5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 68
5 – 1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 69
6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69
7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 70
8 다이렉트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 71
9 실버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 72
10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 73
11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후정산) ····· 74
12 ECO 전자문서 사용약정 특별약관 ····· 77
13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 78
14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 79
15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II ····· 80
16 평균주행거리 선할인 특별약관 ····· 80
17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 82
18 차선이탈 경고장치 장착 할인 특별약관 ····· 82
19 전방충돌 방지장치 장착 특별약관 ····· 83
20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 84
21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 86
22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추가특별약관 ····· 87
23 자녀할인 특별약관 ····· 88
24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 ····· 88
25 티맵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 90
26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장착 할인 특별약관 ····· 91
27 어라운드뷰모니터 장착 할인 특별약관 ····· 92
28 헤드업디스플레이 장착 할인 특별약관 ····· 93
29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만21세이상 가족형) ····· 94
30 퍼마일 특별약관 (월정산형) ····· 94
31 퍼마일 보험료 분할납입 추가 특별약관 (월정산형) ····· 98
32 퍼마일 커넥티드 카 서비스 추가 특별약관 ····· 101
33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 할인 특별약관 ····· 103

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보험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자동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③ 제2항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④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보험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① 보험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터 [첨부]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보험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④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제4조(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첨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납입방법 \ 미납입 보험료		2회 보험료	3회 보험료	4회 보험료	5회 보험료	6회 보험료
비연속 2회납						1개월
연속납	2회납	4개월				
	3회납	2개월	4개월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회납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합니다.

제1장 운전자 연령제한

1 운전자연령 만21/24/26/30/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1/24/26/30/35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1/24/26/30/35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 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1/24/26/30/35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24/26/30/35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운전자연령 만43/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개인소유 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43/48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43/48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 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43/48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3/4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장 운전자 범위제한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개인소유 4종화물, 경화물, 초소형화물, 3종승합, 경승합 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외)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단, 자녀, 계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 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개인소유 4종화물, 경화물, 초소형화물, 3종승합, 경승합 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 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개인소유 4종화물, 경화물, 초소형화물, 3종승합, 경승합 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대인배상Ⅱ」,「대물배상」 또는「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 또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또는「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 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대인배상Ⅱ」,「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법인소유 승용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함)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2.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3.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4.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대인배상Ⅱ」,「대물배상」 또는「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 또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또는「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대인배상Ⅱ」,「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임직원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운전자가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위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증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3편 자기신체사고 보장 확대

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되며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간주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I 」(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II」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배상의무자** 또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업무상 재해 등)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배상의무자**라 함은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

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 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험금의 청구시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3.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4.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5.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6.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때 그 금액
7.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편 차량손해 보장 확대

1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에서 정한 기준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

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②항에서 규정한 사고를 제외한 다음의 사고에 한합니다.
1.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 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Door)나 선루프(Sun roof)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에 따릅니다.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내용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이 체결되고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 (다른 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1. 타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①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다인승1종 · 2종 승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경 · 3종승합자동차 및 초소형 · 경 · 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② 사업용자동차 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대여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여사업자로부터 8일 이상 대여 받은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3. 대여시 소요되는 대차비용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의 자동차가 아닌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또 다른 보험계약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다른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④ 다른자동차의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②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다른 자동차가 〈용어풀이〉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다른 자동차가 〈용어풀이〉의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상한도) 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제6조(손해액의 결정) ①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한 차량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② 다른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 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③ 다른 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④ 다른 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피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권리) ① 보험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회사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제8조(현물보상) 보험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5년이내의 **전기자동차**로서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전기자동차**라 함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의 **구동용 배터리**가 파손되어 수리 또는 부분교체를 통한 활용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구동용 배터리 전부를 새 배터리로 교체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새 배터리를 포함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지급보험금	=	새 배터리의 가액	–	감가상각 적용 후 새 배터리의 가액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구동용 배터리**라 함은 전기자동차에 장착되어 구동 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터리를 말합니다.(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보조배터리 제외)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전기자동차 충전 중 사고 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서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중 사고 보상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전기자동차**라 함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정격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이용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충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화재 또는 폭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를 입은 때
2.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충전 중 감전 사고로 죽거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때

②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해당 특약의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중요한 부분**의 전기적 손해에 한하여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라 함은 해당 전기자동차의 정격의 휴대용 충전기(또는 가정용 충전기기 및 장치), 거주지 혹은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전용 완속충전기 및 급속충전기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충전하던 중**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충전을 위하여 충전설비를 조작한 시점부터 충전 완료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 함은 감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화상 및 신체조직의 괴사, 심혈관계, 신경계, 근골격계 등의 상해로서,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함은 전기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대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1종 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건설기계이고,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

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의 **침수**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만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릅니다.

《용어풀이》
① **침수** :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도어나 선루프를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 이 외에 다음 각 항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관련법상 주차가 허용된 곳** 이외의 장소에 주차중일 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① "**관련법상 주차가 허용된 곳**" 이란 아래의 장소를 말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기장 및 주기가 허용된 곳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도로교통법」에 의해 주차가 허용된 곳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내용에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⑥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또는「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는 보통약관「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또는「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실제 수리 시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 또는 배상책임(대물배상) 대상 자동차가 출고 후 5년을 초과한 경우로서, **외장부품**을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나 피보험자가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를 희망하는 경우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OEM부품**이라 함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하며, **OEM부품 공시가격**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동차제작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외장부품**이라 함은 자동차의 외판을 구성하는 부품으로서 범퍼, 보닛(후드), 펜더, 트렁크리드, 도어 및 백도어를 의미합니다.

제3조(OEM부품 사용에 대한 특례) 회사는 보통약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OEM부품으로 교환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및 「자기차량손해」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OEM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경미한 손상**에 해당하여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
2. 자동차에 이미 장착되어 있던 **OEM부품 또는 품질인증부품 이외의 부품**이 파손되어 교환수리하는 경우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OEM부품 또는 품질인증부품 이외의 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중고부품, 재생부품 등을 의미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상책임(대물배상)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대물배상」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또는 운전 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보통약관 「대물배상」인 경우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인 경우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환입) ①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였으나, 품질인증부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OEM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7조(적용 제외)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OEM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하며,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따른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품질인증부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 지연 등의 사유로 회사가 OEM부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OEM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② 이 특별약관 제3조(OEM부품 사용에 대한 특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따른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5편 사고처리시 필요 비용지원

1 형사합의금 지원 특별약관 Ⅱ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를 가입하고 「형사합의금 지원 특별약관 Ⅱ」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혀 발생된 손해에 대해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② 단, "기명피보험자 제외" 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제1항의 피보험자 중 기명피보험자를 피보험자에서 제외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를 한 경우, [첨부] 형사합의금 지급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상합니다. 다만,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하고, 향후 피보험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케 한 사고
2. 피보험자가 '〈별표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다만 이 단서 중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한 사고
3.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힌 사고

[첨부]형사합의금 지급기준

구 분			일반형	고급형	VIP형	VVIP형
1인당 지급한도	사망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2억원
	상해 등급	1~3급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5억원
		4~5급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8,000만원
		6~7급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8~14급	–	–	100만원	10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② 제1항의 타인 사망에 따른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상으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형사합의금}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별약관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④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타인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배상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타인**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부모**라 함은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시 제출서류)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등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2.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생한 공소장
3.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 명시)
4. 보험금 청구서
5.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6.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② 이 특별약관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3.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피보험자동차 운전자이외의 자의 보험금 청구)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보험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피보험 자동차 운전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변호사선임비용 지원(경찰조사 포함)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대인배상Ⅱ」를 가입하고,「변호사선임비용 지원(경찰조사 포함)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② 단, "기명피보험자 제외" 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제1항의 피보험자 중 기명피보험자를 피보험자에서 제외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금
다음의 사고에 대하여 [첨부]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다만,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형사소송법」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53조에 의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첨부]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기준

구분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
일반형	500만원 기준	500만원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약식기소**라 함은「형사소송법」제449조 규정에 의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말합니다.

②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행비용 지원금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의 사고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 1사고당 300만원을 한도로 실제 변호사 동행비용을 보상합니다.
단, 변호사 동행비용 지원금은 제1항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변호사선임비용 지원(경찰조사 포함)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조합 등에서 공제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장책임액의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장대상 변호사선임비용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각 계약의 보장대상 변호사선임비용 중 최고액} - \text{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장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을 합한 금액}}$$

주) 1. 보장대상 변호사선임비용 :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 (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2. 보장책임액 : (보장대상 변호사선임비용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상한도 중 작은 금액

〈예시〉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의 분담
피보험자의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보장대상 변호사 선임비용) **600만원**

계약1 : 보상한도 500만원, 공제금액 없음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0
보장책임액 = min(600–0, 500) = **500만원**
계약2 : 보상한도 300만원, 공제금액 실제 변호사비용의 50%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300만원 (실제 변호사선임비용의 50%)
보장책임액 = min(600–300 , 300) = **300만원**

$$\text{계약1} = 375 = (600 - 0) \times \frac{\text{계약1(500)}}{\text{계약1(500)+계약2(300)}}$$

$$\text{계약2} = 225 = (600 - 0) \times \frac{\text{계약2(300)}}{\text{계약1(500)+계약2(300)}}$$

④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3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시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등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보험금 청구서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소장, 판결문,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등)
4.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제7조(피보험자동차 운전자 이외의 자의 보험금 청구)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보험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피보험 자동차 운전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벌금비용 지원(스쿨존 및 대물 확대형)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를 가입하고 「벌금비용 지원(스쿨존 및 대물 확대형)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함으로써 생긴 손해 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피보험자)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② 단, "기명피보험자 제외" 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제1항의 피보험자 중 기명피보험자를 피보험자에서 제외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① 대인 벌금비용 지원금
1. 이 특별약관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사고마다 2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2. 위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사고마다 3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대물 벌금비용 지원금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1사고당 5백만원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 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대인벌금비용 · 대물벌금비용}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특별약관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타인**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부모**라 함은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 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시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등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보험금 청구서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원의 판결문 사본
5.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제7조(피보험자동차 운전자이외의 자의 보험금 청구)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보험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피보험 자동차 운전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6편 긴급출동 서비스

1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 경 · 3종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4톤 이하의 3종화물자동차, 초소형 · 경 · 4종화물자동차로서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긴급견인	가.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30㎞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30㎞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는 경우 30㎞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비상급유	가. 피보험자동차가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 운행용으로 1일당 1회, 보험기간 중 총 2회에 한하여 3L를 한도로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다만, 3L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에 대하여 실비를 받고 주유하여 드립니다. 또한, 2회 사용 이후 비상급유 서비스를 추가로 사용할 시에는 제공되는 연료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으로 합니다. 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정지된 경우는 긴급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 한도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에 한하여 긴급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 한도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으로 합니다.
배터리충전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차량 Key 배터리, 연료전지 등은 해당되지 않음)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 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리며, 배터리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타이어 펑크수리 및 교체	가.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지면에 닿은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구멍이 뚫린 단순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2) Run-flat형 타이어, 튜브형 타이어 등의 펑크와 같이 펑크 수리 시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3)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 (4)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 (5) 기타 현장에서 타이어펑크 수리가 곤란한 경우 나. 위 '가'목에 의해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잠금장치해제	가. 피보험자동차의 열쇠를 분실하였거나 피보험자동차 실내에 열쇠를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 나. 외제 차량 및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 중 특수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등)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전문업체에 잠금장치 해제를 의뢰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때 전문업체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

구분	내용
잠금장치해제	하는 추가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의 잠금장치 해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잠금장치 해제서비스 전문업체의 서비스 제공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 잠금장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파손된 부분의 원상회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액 / 엔진오일 / 파워오일 보충	가. 피보험자동차가 브레이크액, 엔진오일, 파워오일의 부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다만, 브레이크액은 1ℓ 이내, 엔진오일은 2ℓ 이내, 파워오일은 1ℓ 이내로 하고, 기준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에 대하여 실비를 받고 보충하여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파워오일 보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라디에이터캡 교환	피보험자동차의 주행 중 라디에이터캡의 파손 및 불량으로 엔진 과열시 라디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 캡의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브레이크등 / 전조등 교환	피보험자동차가 브레이크등, 전조등의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하는 전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등의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윈도우브러쉬 고무교환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윈도우브러쉬 불량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앞쪽 운전석 윈도우브러쉬 고무부분을 새부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윈도우브러쉬 고무부분만 교환할 수 없는 경우 실비를 받고 원도우브러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휴즈 교환	가. 피보험자동차가 휴즈단락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엔진룸의 휴즈는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나. 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현장응급조치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한 차량 고장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품의 정비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부동액보충	가. 피보험자동차가 부동액 부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나. 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벨트 교환	피보험자동차가 도로상 주행 중 각종 벨트(팬벨트, 파워벨트)류의 절단 및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벨트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현장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DOHC차량, 2000cc이상차량 및 외제 차량은 긴급견인 서비스로 대체하여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긴급구난	피보험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구난하여 드립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료점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목적으로 무료점검(엔진, 하체, 전기부분을 말합니다)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지정 정비업체에 1~2일전에 예약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대행서비스, 폐차대행서비스를 실비를 받고 대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2.5톤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2.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3.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4. 외제 차량 및 2500cc 이상의 국산 차량을 구난한 경우
5.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세이프티 로더 등)를 사용하여 구난하는 경우
6. 특수지역(산간, 해안, 갯벌 등)으로 일반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불가능하여 특수장비(포크레인, 크레인, 트랙터, 사륜구동자동차 등)를 사용하는 경우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긴급출동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2.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3.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긴급출동 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5.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하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해(적재물의 손상, 멸실등)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폭설, 폭우, 해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경우
3. 활어차, 적재정량이 초과된 화물차 등 이와 유사한 차량의 적재물의 중량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 이외에 통상적으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서비스의 한도)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

는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총 6회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3회로 한정하여 제공합니다.
② 제1항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횟수를 각각 산정합니다.
③ 제1항에서 이 특별약관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서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서비스는 횟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종료됨과 동시에 특별약관도 자동해지 됩니다.
1. 보험약관「대인배상Ⅰ」이 종료된 때
2.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정해진 횟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 때

제8조(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별약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1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2. 이 추가특별약관은「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대형견인)」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의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긴급견인 서비스를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구분	내용
고급형 (60Km한도)	가.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6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60Km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는 경우 6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1-2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대형견인)

제1조(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2.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이 추가특별약관은「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

입 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의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긴급견인 서비스를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구분	내용
긴급견인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1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0km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는 경우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조(서비스의 한도) ①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총 2회까지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제공합니다.
③ 이 추가특별약관과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횟수를 각각 산정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2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 경 · 3종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4톤 이하의 3종화물자동차, 초소형 · 경 · 4종화물자동차로서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긴급견인	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30㎞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30㎞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는 경우 30㎞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상급유	가. 피보험자동차가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운행용으로 1일당 1회, 보험기간 중 총 2회에 한하여 5L를 한도로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다만, 5L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에 대하여 실비를 받고 주유하여 드립니다. 또한, 2회 사용 이후 비상급유 서비스를 추가로 사용할 시에는 제공되는 연료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으로 합니다.

구분	내용
비상급유	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정지된 경우는 긴급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 한도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에 한하여 긴급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 한도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으로 합니다.
차량진단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진단을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30가지 주요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량진단 내역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진단서비스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비이력관리	보험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내역, 소모품 교환주기, 차량사항 등을 기록한 정비이력통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작업시간이 1시간이상 소요**될 때에는 수리완료 후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 차량운반 서비스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소모품 교환 등 단순 수리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운반거리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운반거리는 60㎞를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0가지 주요항목**이라 함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파워오일, 브레이크액, 타이밍 벨트, 팬벨트, 배터리, 스타트모터, 알터네이터, 플러그배선, 점화플러그, 클러치, 클러치실린더, 배기파이프, 소음기, 부동액(냉각수), 라디에이터호스, 주차브레이크, 브레이크패드(라이닝), 에어컨 벨트, 타이어공기압, 타이어마모, 예비타이어, 에어컨(히타), 헤드램프(안개등), 브레이크등, 워셔액, 와이퍼브레이드, 경음기, 실내등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작업시간이 1시간이상 소요**란 정비작업장에서 수리가 시작된 후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으로, 차량진단서비스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는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해당 서비스에 따릅니다.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수리 및 교체	잠금장치해제
브레이크액 / 엔진오일 / 파워오일 보충	라디에이터캡 교환	브레이크등 / 전조등 교환
윈도우브러쉬 고무교환	휴즈 교환	현장응급조치
부동액보충	벨트 교환	긴급구난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

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긴급출동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2.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3.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긴급출동 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5.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하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해(적재물의 손상, 멸실등)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폭설, 폭우, 해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경우
3. 활어차, 적재정량이 초과된 화물차 등 이와 유사한 차량의 적재물의 중량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 이외에 통상적으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서비스의 한도)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총 10회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3회로 한정하여 제공합니다.
② 제1항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횟수를 각각 산정합니다.
③ 제1항에서 이 특별약관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서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차량진단, 정비이력관리, 수리차량운반 서비스는 횟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종료됨과 동시에 특별약관도 자동해지 됩니다.

1. 보험약관「대인배상Ⅰ」이 종료된 때
2.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정해진 횟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 때

제8조(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별약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1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2. 이 추가특별약관은「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대형견인)」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특별약관의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긴급견인 서비스를 다음의 내용으

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구분	내용
고급형 (60Km한도)	가.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6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60Km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는 경우 6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2 -2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대형견인)

제1조(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2.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이 추가특별약관은「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서비스 특별약관의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긴급견인 서비스를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구분	내용
긴급견인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1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0km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는 경우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조(서비스의 한도) ①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총 2회까지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제공합니다.
③ 이 추가특별약관과 한화 긴급출동 플러스 서비스 특별약관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횟수를 각각 산정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3 한화 중형화물 · 승합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적재정량 1.4톤 초과 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법정승차정원 16인승 초과 2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또는 **기타 보험회사가 인정한 차량**으로서 『한화 중형화물 · 승합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 보험회사가 인정한 차량**이라 함은 다음의 차량을 말합니다.
1. 탑재차량 또는 장착차량(붐, 아웃리거 등 특수작업에 사용되는 장치가 탑재 또는 장착된 차량을 말합니다.)이 적재정량 5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가. 사다리차
   나. 고소작업차
   다. 리프트카
   라. 위 '가'부터 '다'의 차량과 유사한 형태로 사용되는 자동차
2. 적재정량 1.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법정승차정원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로서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차량
3. 위 1 또는 2 이외의 견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차량 중 보험회사가 인정한 차량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비상급유	가. 피보험자동차가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 운행용으로 1일당 1회에 한하여 5ℓ 를 한도로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다만, 5ℓ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에 대하여 실비를 받고 주유하여 드립니다. 나.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비상급유는 휘발유, 경유에 한하며 LPG 및 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는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해당 서비스에 따릅니다.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해제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긴급출동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2.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3.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긴급출동 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5.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하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해(적재물의 손상, 멸실등)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폭설, 폭우, 해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경우
3. 활어차, 적재정량이 초과된 화물차 등 이와 유사한 차량의 적재물의 중량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 이외에 통상적으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서비스의 한도)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간 중 총 6회까지로 합니다. 단, 비상급유 서비스의 경우 보험기간 중 총 이용가능 한도는 3회로 한정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회로 한정하여 제공합니다. 단 비상급유 서비스의 경우 보험기간 중 총 이용가능 한도는 1회로 한정합니다.
③ 제1항 및 2항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횟수를 각각 산정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종료됨과 동시에 특별약관도 자동해지 됩니다.
1. 보험약관「대인배상Ⅰ」이 종료된 때
2.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정해진 횟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 때

제8조(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별약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1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대형견인)

제1조(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한화 중형화물 · 승합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한화 중형화물 · 승합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의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구분	내용
긴급견인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1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0km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는 경우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조(서비스의 한도) ①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총 2회까지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제공합니다.
③ 이 추가특별약관과 한화 중형화물 · 승합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횟수를 각각 산정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4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친환경자동차)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 초소형 · 경 · 4종화물자동차로서 **친환경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친환경자동차**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긴급견인	가.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150㎞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50㎞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는 경우 150㎞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긴급 충전 지원	피보험자동차 고전압배터리(리튬이온전지 등) 방전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가능거리가 10km 이내인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충전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15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5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는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해당 서비스에 따릅니다.

타이어 펑크수리 및 교체	잠금장치해제	브레이크액 보충
윈도우브러쉬 고무교환	휴즈 교환	현장응급조치
긴급구난	무료점검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긴급출동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2.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3.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긴급출동 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5.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하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해(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폭설, 폭우, 해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경우
3. 활어차, 적재정량이 초과된 화물차 등 이와 유사한 차량의 적재물의 중량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 이외에 통상적으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서비스의 한도)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총 6회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3회로 한정하여 제공합니다.
② 제1항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횟수를 각각 산정합니다.
③ 제1항에서 이 특별약관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서비스는 횟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종료됨과 동시에 특별약관도 자동해지 됩니다.
1. 보험약관「대인배상Ⅰ」이 종료된 때
2.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정해진 횟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 때

제8조(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별약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⑤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친환경자동차)Ⅱ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 초소형 · 경 · 4종화물자동차로서 **회사가 인정하는 자동차제조사**의 차량이면서 **친환경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회사가 인정하는 자동차제조사**라 함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사와 제휴한 업체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한 자동차제조사를 말합니다. (대상 자동차제조사 :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친환경자동차**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긴급견인	가.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150㎞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50㎞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는 경우 150㎞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동 배터리 충전	가. 피보험자동차의 **구동배터리** 방전으로 운행이 정지된 경우, 보험기간 중 총 2회, 1일 1회에 한하여 1회당 15kwh를 한도로 구동배터리 충전하여 드립니다. 나. 위 '가'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긴급출동 하였으나 현장 조치만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 운행하기 어려워 긴급견인을 할 경우에는 충전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15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5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구동 배터리**라 함은 전기자동차에 장착되어 구동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보조(시동) 배터리 제외)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는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해당 서비스에 따릅니다.

타이어 펑크수리 및 교체	잠금장치해제	브레이크액 보충
윈도우브러쉬 고무교환	휴즈 교환	현장응급조치
긴급구난	무료점검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긴급출동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2.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3.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긴급출동 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5.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하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해(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폭설, 폭우, 해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경우
3. 활어차, 적재정량이 초과된 화물차 등 이와 유사한 차량의 적재물의 중량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호, 제2호, 제3호 이외에 통상적으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서비스의 한도)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총 6회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3회로 한정하여 제공합니다.
② 제1항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횟수를 각각 산정합니다.
③ 제1항에서 이 특별약관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서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서비스는 횟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종료됨과 동시에 특별약관도 자동해지 됩니다.
1. 보험약관「대인배상Ⅰ」이 종료된 때
2.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정해진 횟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 때

제8조(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별약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7편 기타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고,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승합자동차,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인 경우에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대인배상Ⅱ」,「대물배상」 또는「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상해를 입었을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 또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 또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할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다인승1종 · 2종 승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경 · 3종승합자동차 및 초소형 · 경 · 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7.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대인배상Ⅰ」,「대물배상」 또는「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대인배상Ⅰ」 및「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대물배상」의 경우 보험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2.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대인배상Ⅰ」 및「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3.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의「대인배상Ⅰ」및「대물배상」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4.「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제1항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대인배상Ⅰ」및「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제4조(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양수인은 제1항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③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통약관「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과 상관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④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비사업용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를 전부 일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를 보험기간 중도에 취득(대차계약에 의하여 6월이상의 기간으로 임차한 자동차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그 자동차(이하 '중도취득자동차'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이 보험계약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도취득자동차에 이미 체결된 유효한 다른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중도취득자동차로 봅니다.

제3조(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책임기간)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계약자가 중도취득자동차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제4조(차량변동현황의 통지) 보험계약자는 매월 10일(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전월분의 차량변동현황을 보험회사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중도취득자동차
2. 이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보험회사에 통지를 한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한 때

제5조(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제6조(적용배제)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 제2조(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 전부를 이 보험에 부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자동차
2.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 제4조(차량변동현황의 통지)에서 정한 통지의 지체 또는 누락이 있었던 경우, 그 지체 또는 누락된 자동차 및 그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자동차

제7조(보험료의 정산)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4조(차량변동현황의 통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중도취득자동차 또는 양도, 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의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이때의 보험료는 서로 상쇄하여 정산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보험료를 서로 상쇄하여도 보험계약자가 더 내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제4조(차량변동현황의 통지)에서 정한 통지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하 '납입일'이라 합니다)까지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추가보험료를 납입일까지 보험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이후 중도취득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8조(특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6조(적용배제)에 해당하는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제7조(보험료의 정산) 제2항에서 정한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관용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보통약관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이 확정된 경우"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이하 '경찰 · 군인 등'이라 합니다)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 유족연금 ·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들에 대하여 보통약관「대인배상Ⅰ」및「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사항이외에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대체차량의 보험계약 승계)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때에는 대체차량에 보험계약이 승계되며, 이 경우 적용하여야 할 보험료가 다를 때에는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징 또는 반환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보통약관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규정은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으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로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1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에 의해 가입한 자동차중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 불구하고「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도로주행시험을 위해 운전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6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통약관의「대물배상」또는「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대물배상」에 해당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주차위반차량(이하 '피견인차량'이라 합니다)을 **견인개시한 때**부터 차량보관장소로 인도한 때까지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견인차량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그 피견인차량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견인개시한 때**라 함은 견인용자동차의 특수연결장치로 피견인차량을 연결하여 견인동력장치의 작동을 개시한 때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물배상」에 해당하는 사항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견인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견인차량의 시건장치 개폐작업으로 인한 손해

제4조(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보험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되,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상한도에 불구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⑦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탑승 중인 피보험자동차를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해당 대리운전자를 피보험자로 보아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대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자**라 함은 피보험자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전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운전업체(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 소속업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명시된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음의 사람은 제외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피용자
2. 피보험자동차를 임시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자

② 위 제1항의 사고 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대리운전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일지라도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할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대리운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발생한 손해가 위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가 요청한 목적에 반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현저히 벗어나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2. 대리운전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
3. 탑승자나 제3자의 교대운전 또는 임의대리운전으로 인한 손해
4.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 중에 발생한 손해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8 다이렉트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2.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의 배기량이 1,600cc 이하 일반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인 경우 (단, 기명피보험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반드시 1대여야 함)
   나.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경우
   다.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30세** 이상인 경우
   라.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간 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마. 기명피보험자에게 **만20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바. 예외조항 :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이면서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연간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마의 사항은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OO세**라 함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가입시점에서 만OO세인 사람을 말합니다.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 정도가 '중증'(2019. 6. 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인)인 경우로 다음의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피보험자동차의 배기량이 2,000cc 이하 일반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인 경우 (단, 기명피보험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반드시 1대여야 함)
   나.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경우
   다.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간 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동거가족**이라 함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합니다.

4.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간 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로서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 변경된 차량인 경우

제2조(제출서류) 이 특별약관 가입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군구(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득관계 증명서
      (1) 제출대상 :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2) 소득증빙기간 : 이 특별약관 가입시점 이전 발급가능한 직전년도 1년
      (3) 예외조항 :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용
(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서
(나) 사업등록자인 경우	소득금액 증명서
(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라) 무소득자인 경우	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구 분	내용
(마) 기타	그 밖에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나. 기명피보험자 및 부양자녀가 명기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단,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다. 제2호 가의 소득요건 증빙서류
4.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 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나. 제2호 가의 소득요건 증빙서류

제3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및 기타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⑨ 실버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2.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3.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운전 인지 · 지각 평가**' 또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4. 제3호의 '운전 인지 · 지각 평가' 결과의 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 또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지의 최종 판정이 운전능력진단 1~3등급인 경우(단,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결과지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에도 가입 가능합니다). 단, '운전 인지 · 지각 평가'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보통약관을 가입하는 날까지의 경과기간이 2년,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보통약관을 가입하는 날까지의 경과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만65세**라 함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특별약관 가입시점에서 만65세인 사람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운전 인지 · 지각 평가**라 함은 도로교통공단이 2018년12월31일까지 운영하는 교통안전교육에 포함되는 검사를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인지능력 자가진단**이라 함은 도로교통공단이 2019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교통안전교육에 포함되는 검사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의 제3호 및 제4호의 조건이 만족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 인지 · 지각 평가' 또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결과가 포함된 교통안전교육 교육필증 또는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할인)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 인지 · 지각 평가' 또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검사일이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전인 경우 :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첫날
2. '인지능력 자가진단' 검사일이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 :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검사일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가입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시점과 동일하게 종료됩니다.

③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 동안의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하여 드립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기명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입대상임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⑩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제1호 다목을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2. 제1호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 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부품)을 사용한 경우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의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중고부품 : 사이드 미러, 프론트 팬더, 본네트,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판넬,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 도어, 리어 피니셔, 쿨러 콘덴서, 테일 램프, 헤드 램프, 안개등, 룸미러(하이패스 기능), 전 · 후방 센서
2.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

《용어풀이》
새 부분품 가격이란 AOS(Areccom Online System)內등록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AOS內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제작사에서 권장하는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AOS란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수리비견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4항 제

2호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제1항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2.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제2항의 경우 대물배상 대상차량의 기명피보험자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대물배상」에 해당하는 사항,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손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보험개발원이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 또는 대물배상 대상차량을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제5조(보험금의 환입) ①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에서 산출된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부품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6조(적용배제) 보험개발원의 인정 업체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친환경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1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후정산)

제1조(적용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개인소유 승합자동차, 개인소유 화물자동차, 법인소유 승용자동차, 법인소유 화물자동차, 법인소유 승합자동차로서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잔여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에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합니다)를 장착하고 보험기간동안 '운행정보 확인장치'에 기록된 운행정보를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송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2. 보험기간동안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를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송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
> ① 피보험자동차 출고 시 차량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된 장치

② 상기 '①'이외에 피보험자가 별도로 구매하여 장착한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위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위조, 변조한 경력이 있거나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퍼마일 특별약관(월정산형)』을 가입하고 보험료 정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정산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제2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과 이를 확인한 날짜 또는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전송하고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전 계약에서 마일리지 특별약관 정산에 사용된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45일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1년간 주행거리 확인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④ 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후 계약에서 마일리지 특별약관 가입에 사용된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교체(대체) 이전 차량과 교체(대체) 이후 차량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기간 첫날부터 해지시점까지 주행거리 확인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제3조(운행정보 확인에 관한 일반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기간 중 사고 처리 및 긴급출동서비스 제공시 피보험자동차의 총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운행정보 확인 시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1년간 주행거리가 2만㎞를 초과하여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 확인장치 또는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불량 · 오작동 및 조작 · 교체, 운행정보의 훼손 등에 따라 정확한 1년간 주행거리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표시장치 계기판 사진의 총 주행거리가 누락되어 1년간 주행거리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등)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 제2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주행거리정보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변경,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제3항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보를 송부 받은 날 또는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운행정보가 확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에 고지한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첨부1]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운행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의 은행계좌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을 제외하고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첨부1] 보험료 정산금액 계산

보험료 정산금액 =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의 적용보험료(주) x 1년간 주행거리별 할인율

(주) 적용보험료란 대인배상 Ⅰ · Ⅱ, 대물배상(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부모 및 자녀 확대 추가 특별약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1년간 주행거리	적용보험료의
1,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000km 초과 2,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2,000km 초과 3,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3,000km 초과 4,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4,000km 초과 5,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5,000km 초과 6,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6,000km 초과 7,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7,000km 초과 8,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8,000km 초과 9,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9,000km 초과 10,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0,000km 초과 11,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1,000km 초과 12,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2,000km 초과 13,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3,000km 초과 14,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4,000km 초과 15,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5,000km 초과 16,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년간 주행거리	적용보험료의
16,000km 초과 17,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7,000km 초과 18,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18,000km 초과	0%

[첨부2] 1년간 주행거리 계산

$$\text{1년간 주행 거리} = \left(\text{보험기간 만료 시 고지된 주행거리} - \text{보험 가입 시 고지된 주행거리}\right) \times \frac{365(\text{윤년:}366)}{\text{주행거리 계산 기간}^{(주)}}$$

㈜ 주행거리 계산 기간이란 보험 가입 시 주행거리를 고지한 날에서 보험기간 만료 시 주행거리를 고지 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단, 해외 체류 등으로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고 보험계약기간을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 제외)

12 ECO 전자문서 사용약정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ECO 전자문서 사용약정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계약자료**라 함은 보험회사가 이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증권, 보험약관, 만기·분납보험료 안내문 등의 자료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다음의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자는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우편
2. 모바일 메신저 등의 메시지 서비스

제2조(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료를 수령받을 전자적 방법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전자우편 : 보험계약자료를 받을 전자우편의 수령처(이메일주소) 정보
2. 모바일메신저 등의 메시지 서비스 : 핸드폰 번호 등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정보
② 제1항에서 알려준 정보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정보에 따라 보험계약자료를 교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료의 교부) ① 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가 알려준 정보에 따라 보험계약자료를 지체없이 교부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을 통해 교부된 보험계약자료를 계약사항 변경 등의 이유로 재교부 요청할 경우,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1항을 통해 교부된 보험계약자료를 교부된 날로부터 1개월내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해당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각종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직접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료를 인쇄물로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자동 소멸됩니다.

제5조(보험계약자 및 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 이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자는 보험 기간에 각종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수령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보험계약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⑬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라 함은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영상정보 등을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차량에 고정 장착된 전용 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및 테블릿 PC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를 보험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2. 보험회사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하는 경우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 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연식, 부속품가액 등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또는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에 영상기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피보험자동차에 상시 고정 장착해 놓고 작동시켜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고와 관련된 영상 기록 정보를 보험회사가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제1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제2항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

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⑭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자동차상해 특별약관」,「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중 하나가 체결되고,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하는 자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은 각 피보험자별로 지정되며, 해당 피보험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에게「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자동차상해 특별약관」,「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사망보험금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하는 각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정대리청구인의 순위는「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서 정한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의 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1인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①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취소신청서(회사양식)
2. 해당 피보험자의 동의서(회사양식)
3. 보험계약자 및 해당 피보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2. 지정대리청구인과 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4.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5. 동일순위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항에서 정한 동일순위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제1항에 의해서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지정대리청구인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특별약관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리청구권을 소멸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⑮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II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개인소유 4종화물, 경화물, 초소형화물, 3종승합, 경승합 자동차 및 법인소유 승용자동차로서 『단기 운전자 확대 특별약관II』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 내용)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제2편 운전가능자 제한 특별약관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선택한 기간에는 해당 운전자를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책임기간)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회사의 책임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⑯ 평균주행거리 선할인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이 1년이고,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위조, 변조한 경력이 있거나 주행거리 연동 상품을 가입하고 보험료 정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정산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2. 이 특별약관 가입 시 보험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라 함은 [첨부1]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 계산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총 주행거리를 연간 평균 주행거리로 환산한 것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가입한 주행거리 연동상품을 책임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정산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정산 계약의 연간 주행거리를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로 정합니다.

[첨부1]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 계산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	=	보험 가입시 고지된 주행거리	/ (	보험 가입시 주행거리 고지 일자	−	최초등록일자	) ×	365 (윤년:366)

㈜ 단, 해외 체류 등으로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고 보험계약기간을 유예한 경우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의 계산시 유예기간 제외합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서 할인받은 보험료의 반환 사유 발생 시 환입을 위한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1. 책임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상품의 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의 정산 내역을 통해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정보
2. 피보험자동차의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정보
3. 기타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나 정보

③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전 계약에서 마일리지 특별약관 정산에 사용된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의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등)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운행정보를 변경,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제2항의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자동가입) 이 특별약관 가입시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제5조(할인보험료의 계산) ①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하는 보험료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할인 보험료	=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의 적용보험료㈜	x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할인율

㈜ 적용보험료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부모 및 자녀 확대 추가 특별약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에 의한 보험료 정산금액이 있는 경우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에도 불구하고, [첨부2] 보험료 정산금액 계산에 따라 위 '①'의 할인보험료를 차감하여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계산합니다.

[첨부2] 보험료 정산금액 계산

보험료 정산금액	=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의 적용보험료 ㈜	x	(ECO마일리지 특별약관 (후정산)의 할인율) – (이 특별약관의 할인율)

㈜ 1.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의 적용보험료는 이 특별약관의 할인 보험료가 감안되지 않은 적용보험료를 말합니다.
2. 적용보험료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부모 및 자녀 확대 추가 특별약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⑰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되며 보통약관 「대물배상」을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물배상」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의무보험과 관련하여 보통약관 「대물배상」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제2조(보상 내용) 이 특별약관의 대물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2절 대물배상」과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⑱ 차선이탈 경고장치 장착 할인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4종화물, 3종승합 및 법인소유 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 최초 출고시 **차선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고 「차선이탈 경고장치 장착 할인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차선이탈 경고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차선 이탈시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차선이탈 경고장치(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또는 차선 이탈시 핸들을 조향하여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차선유지 지원장치(LKAS:Lane Keeping Assist System)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6의 29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포함된 경우와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차선이탈 경고장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선이탈 경고장치 장착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차선이탈 경고장치를 상시 작동시켜야 하며, 소음 등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충분히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볼륨, 진동, 경고등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⑲ 전방충돌 방지장치 장착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4종화물, 3종승합 및 법인소유 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최초 출고시 **전방충돌 방지장치**를 장착하고 「전방충돌 방지장치 장착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전방충돌방지장치**라 함은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전방충돌경고장치(FCW(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또는 차량을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하여 자동으로 제동 장치를 작동시키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포함된 경우와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전방충돌방지장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전방충돌방지장치 장착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방충돌방지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전방충돌방지장치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전방충돌방지장치를 상시 작동시켜야 하며, 소음 등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충분히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볼륨, 진동, 경고 등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전방충돌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 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 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전방충돌방지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 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⑳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

의 대상이 되는 경우

《용어풀이》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 공제로서 보험 · 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 · 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 · 공제로 표시된 보험 · 공제의 보험료 · 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 · 보증 · 공제의 보험료 · 보증료 · 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 · 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기명피보험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경우

《용어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1)부터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 · 부상으로 인해 중단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 · 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증명서류의 제출) ①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이하, "장애인 증명서류"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적용대상)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증명서류를 제1항의 장애인 증명서류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3조(장애인 전용 보험으로의 전환)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2조(증명서류의 제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제1조(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연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제4조(전환 취소) ① 보험계약자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의 전환 취소를 보험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전환을 취소하여 드리며, 취소한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표시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전환을 취소한 이후에는, 재전환을 요청 할 수 없습니다.
③ 최초 전환을 요청했던 당해연도에 제1항에 따라 전환 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아닌 일반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 ·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21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자율주행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통약관 제1장 「배상책임」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본래 기능과는 다르게 작동되어 발생한 사고
2.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 · 침입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3.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법원의 확정판결, 사고조사 등에 따라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된 사고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자율주행모드**라 함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율주행 자동차 스스로 운행 중인 상태를 말하며, 자율주행모드에서는 운전석에 탑승중인 사람을 운전자 및 운전 중인 것으로 봅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라 함은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장비, 소프트웨어 등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장치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호기, 안전표지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등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7조의 피보험자와 같습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피보험자 이외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일방과실 사고인 경우. 단,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2에 해당하는 고의 사고는 보상합니다.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7(이해관계자의 의무 등) 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해야하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를 위한 회사의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해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7(이해관계자의 의무 등)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가 확보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및 분석 · 조사결과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를 위한 회사의 요청에 협력해야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2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통약관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과 상관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6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 규정에 따릅니다.

23 자녀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개인소유 4종화물 또는 개인소유 3종승합인 경우
2. 보험기간 첫 날을 기준으로 기명피보험자에게 만 15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3.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자녀**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출산 예정인 자녀**란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명의의 임신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태아를 말합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제1조(가입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계약 등을 통해 제1조(가입대상)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기간)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과 같습니다. 단, 자녀를 출산 예정이고, 임신확인서의 임신확인일이 보험기간 첫 날 이후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의 임신확인일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 시작일로 합니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가입대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간은 보험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 한하여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기간) 제2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는 위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4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법인소유 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 정보를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제조사에 통보하는 장치(이하 '**사고통보장치**'라 함)가 장착되고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용어풀이〉의 ②에서 규정하는 기능이 상시 작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보험회사가 사고통보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 제3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위 제1항을 보험회사와 자동차제조사 간의 제휴사업계약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제휴사업계약이 종료되어 제1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이 특별약관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사고통보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① 차량 출고 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된 장치(휴대전화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장치는 해당되지 않음)
② 피보험자동차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아래의 기능이 상시 작동되어 제휴 자동차제조사로 송신 · 수집되며,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의로 작동을 중지할 수 없는 장치
가.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 발생 시 자동송신 기능
나. 차량운행정보(운행시간, 운행속도 등) 저장 등
③ 피보험자동차의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발생 정보가 자동차제조사 또는 보험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됨으로서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할 것

제2조(보험회사의 사고 및 긴급상황 확인 및 조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에어백 전개사고 정보를 자동차제조사로부터 받은 경우 자동으로 사고접수를 하고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드립니다. 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3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하거나 자동차제조사가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 제1조(적용대상)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합니다.

제4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통보장치가 상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통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 중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제조사에 수집된 사고당시 차량운행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① 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통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③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와 관련된 차량운행정보의 확인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제6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 공제 지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5 티맵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개인소유 4종화물 또는 개인소유 3종승합인 경우
2. 기명피보험자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이 특별약관의 가입 시점에 **안전운전점수**가 보험회사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4.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 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프로그램**이란 단말기 등에서 구현되는 안전운전 관련 프로그램으로 특별약관 가입시점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점수**란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주행하여 산정된 점수를 말합니다. 단, 안전운전점수 확인일 이전 6개월 이내에 500km 이상 주행한 경우에 한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단말기가 아니거나 본인의 안전운전점수가 아닌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무효, 해지, 취소, 철회 등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이 특별약관은 보험회사와 안전운전프로그램 회사 간의 제휴사업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제휴사업 계약이 없거나, 종료되어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안전운전점수가 없거나 시스템 오류로 안전운전점수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계약자 등은 특별약관 가입 시 안전운전점수의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른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특별약관의 가입 및 적용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 할인) ①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시점에 기명피보험자의 안전운전점수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험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제1조(적용대상) 제1항 제4호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서 제외합니다.

③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하는 등 안전운전점수 측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량 또는 다른 교통수단에서 안전운전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이 기명피보험자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한 상태로 운전하도록 하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및 해지) ① 보험회사가 확인한 안전운전점수가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안전운전점수가 아닌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②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기간 동안에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제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변경일 24시부터 이 특별약관은 해지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6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장착 할인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4종화물, 법인소유 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 최초 출고시 **후측방충돌방지장치**를 장착하고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장착 할인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후측방충돌방지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차량에 장착된 레이더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후측방 영역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후측방충돌 경고장치(BSD:Blind Spot Detection) 또는 차량에 장착된 레이더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후측방 영역을 감지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운전자에게 정보를 알려주며 충돌위험시 차체를 제동하여 충돌회피를 도와주는 후측방충돌방지 보조장치(BCA:Blind Spot Collision Avoidance Detection)를 말합니다. 다만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포함된 경우와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후측방충돌방지장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장착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후측방충돌방지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후측방충돌방지장치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후측방충돌방지장치를 상시 작동시켜야 하며, 소음 등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충분히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볼륨, 진동, 경고등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동차의 후측방충돌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 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후측방충돌방지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

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7 어라운드뷰모니터 장착 할인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4종화물, 법인소유 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 최초 출고시 **어라운드뷰모니터**를 장착하고 「**어라운드뷰모니터 장착 할인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어라운드뷰모니터**라 함은 자동차운행시 차량 전후좌우에 장착된 카메라 등의 장치로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주위 360도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차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보여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다만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포함된 경우와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어라운드뷰모니터 장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어라운드뷰모니터 장착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어라운드뷰모니터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어라운드뷰모니터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어라운드뷰모니터를 상시 작동시켜야 하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해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어라운드뷰모니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 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어라운드뷰모니터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8 헤드업디스플레이 장착 할인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법인소유 승용자동차로서 최초 출고시 **헤드업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헤드업디스플레이 장착 할인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헤드업디스플레이**라 함은 자동차운행시 운전석 앞 유리창에 네비게이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여 정면을 상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등에 애플리케이션이 탑재되거나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포함된 경우와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헤드업디스플레이 장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헤드업디스플레이 장착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헤드업디스플레이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헤드업디스플레이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동차의 헤드업디스플레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험금 공제 지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9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만21세이상 가족형)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개인소유 4종화물, 경화물, 초소형화물, 3종승합, 경승합 자동차로서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만21세이상 가족형)』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만21세이상 가족**인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해당운전자를 제2편 운전가능자 제한 특별약관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1세이상**이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외)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단, 자녀, 계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를 말합니다.

제3조(책임기간)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회사의 책임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0 퍼마일 특별약관 (월정산형)

제1조(적용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회사에서 제공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이하 '운행정보'라 합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합니다)를 피보험자동차에 장착하고,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운행정보에 따라 분할 납입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개인소유 승합자동차, 개인소유 화물자동차, 법인소유 승용자동차, 법인소유 화물자동차, 법인소유 승합차**로서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의 보험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을 보험기간 중도에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
2. 피보험자동차의 구조상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장착 후에도 운행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계를 조작하거나,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보험기간동안 고의로 탈거, 훼손 또는 조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Ⅰ』 및 『대물배상』만 가입하는 경우 또는 가입되어 있는 경우
5.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제2항,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단, 해당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 또는 『평균주행거리 선할인 특별약관』을 가입 한 경우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행거리 연동 상품을 가입하고 보험료 정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정산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④ 이 특별약관은 해외 체류 등으로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고 보험계약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주행하여 거리 이동이 있는 경우 주행한 거리 및 운전 습관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

1.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 12V 소켓 전용 통신 장치. 이와 달리 피보험자가 별도로 구매한 GPS Tracker 등의 차량용 통신 장치는 운행정보 확인장치로 보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동차가 보험회사와 제휴된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작된 차량인 경우 차량 출고 시 제조사에 의해 장착된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측정이 가능한 때에 한하여 위 ①의 장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과 이를 확인한 날짜 또는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전송하고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전 계약에서 마일리지 특별약관 정산에 사용된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30일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1년간 주행거리 확인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기간 첫날부터 해지시점까지 주행거리 확인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습득 및 장착이 가능한 배송지 주소를 이 특별약관 가입 즉시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단, 보험의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전까지는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배송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보험의 책임개시일까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장착하고, 동일 기간 내에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부하여야 합니다. 단, 갱신계약 등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동안 운행정보 확인장치에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피보험자동차에 상시 고정 장착한 상태에서 운행하여야 합니다.

⑧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15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교체(대체)된 차량에 장착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교체(대체) 이전 차량과 교체(대체) 이후 차량의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상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시동이 켜진 후 정상적으로 장착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2.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파손이 발생한 경우
3.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분실 또는 도난이 발생한 경우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임의로 폐기한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정상 작동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LED창이 발광 되지 않거나 적색인 경우
2. 정상적으로 주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주행거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⑩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재송부하는 새로운 운행정보 확인장치로 교체해야 하며, 이 경우 교체된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수취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착하고, 동일 기간 내에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부하여야 합니다.
1. 위 제9항에 따라 보험회사에 알린 경우
2. 보험회사가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고장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린 경우
3.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상 작동이 의심되거나 안전상의 우려가 있어 보험회사가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반납을 요청한 경우

⑪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중이던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보험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만료일, 해지일, 취소일 또는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회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을 경우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잔존가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 보험회사에서 회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보험계약**이 만료,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2. 위 제10항에 따라 새로운 운행정보 확인장치로 교체하는 경우(단, 제9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반납없이 잔존가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말합니다.

⑫ 보험계약 만료일을 보험의 책임개시일로 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반납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⑬ 보험계약자의 『퍼마일 보험료 분할납입 추가 특별약관(월정산형)』 제3조(보험료의 산정 및 납입방법)에 따른 월납보험료와 정산보험료의 납입은 보험계약자 명의의 신용카드 혹은 지정은행계좌를 통해 납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료 납입을 위해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해당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제 수단의 변경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조(운행정보 확인에 관한 일반사항)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7항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에 고정 장착된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통해 운행정보를 확인합니다.
②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 또는 최종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간 주행거리를 18,000km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을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로부터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통해 운행정보를 확인합니다.

③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6항에 따라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연간 주행거리를 18,000km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장착한 경우 장착한 날로부터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통해 운행정보를 확인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및 제3조(운행정보 확인에 관한 일반사항)의 정보, 사진 등 송부 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장착하여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
   나. 피보험자동차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경우
   다. 피보험자동차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 촬영 사진 원본을 고의로 조작하는 경우
2.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3항에 따라 등록된 신용카드가 **사고카드**임이 밝혀진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및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단, 거래정지의 경우 보험회사에 등록된 이후에 거래가 정지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결제 신용카드의 변경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위 제1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계약은 보험의 책임개시일 기준의 연간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는 계약(이 경우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책임개시일 기준의 연간 보험료 전액과 보험회사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위 제1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사용 중이던 운행정보 확인장치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잔존가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① 보험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제3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② 위 제1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취소로 된 경우 보험계약은 보험의 책임개시일 기준의 연간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는 계약(이 경우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책임개시일 기준의 연간 보험료 전액과 보험회사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위 제1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취소로 된 경우 사용 중이던 운행정보 확인장치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잔존가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 보험회사에서 회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6조(보험계약자의 특별약관 계약의 임의해지)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시점까지의 보험료는 **제8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에 따라 즉시 정산하며, 이후 보험계약은 연간보험료 전액을 납입하는 계약(이 경우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으로 전환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 계약이 임의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제1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합니다.
③ 위 제1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임의해지된 경우 사용 중이던 운행정보 확인장치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잔존가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 보험회사에서 회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7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을 제외한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제2항 및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제2항에 따라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2. 『퍼마일 보험료 분할납입 추가 특별약관 (월정산형)』 제5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의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② 위 제1항 제1호에 의해 해지되는 시점은 이 특별약관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제2항 및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제2항에서 정한 납입기한 말일의 24시로 합니다.
③ 위 제1항 제2호에 의해 해지되는 시점은 『퍼마일 보험료 분할납입 추가 특별약관 (월정산형)』 제4조(보험료의 납입최고)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 말일의 24시로 합니다.
④ 위 제1항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의무보험의 보험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3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제8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① 보험회사는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과 최종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으로 보험기간 중 주행거리에 따라 최종 보험료를 확정하며, 보험기간동안 납입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드립니다.
② 다만,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 또는 최종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연간 주행거리를 18,000km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험기간 중 주행거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text{보험기간 중 주행거리} = \left(\text{보험기간 만료 시 고지된 주행거리} - \text{보험 가입 시 고지된 주행거리}\right) \times \frac{\text{보험기간}}{\text{주행거리 계산 기간}^{(주)}}$$

㈜ 주행거리 계산 기간이란 보험 가입 시 주행거리를 고지한 날에서 보험기간 만료 시 주행거리를 고지 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1 퍼마일 보험료 분할납입 추가 특별약관 (월정산형)

제1조(적용대상) ① 이 추가 특별약관은 『퍼마일 특별약관 (월정산형)』에 가입하고, 보

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운행정보에 따라 월 단위로 분할 납입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해당 특약에 부가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추가 특별약관에서 보험료는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주말사망 및 후유장애 확대 특별약관, 가족사랑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부모 및 자녀 확대 추가 특별약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는 이 추가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제3조(보험료의 산정 및 납입방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료의 산정 및 납입방법) ① 보험회사는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통해 집계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와 보험회사에서 정한 보험요율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1. **가입 보험료** = **기본료** 1회분 + (2,000 × **Km 보험료**)
2. **월납 보험료** = **기본료** 1회분 + (약정 납입일자 이전 월의 주행거리 × **Km 보험료**)
   단,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을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월납보험료는 연간 주행거리를 18,000km 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3. **정산 보험료** = (연간 기본료 + 보험기간 만료 시 확인된 보험기간 중 주행거리 x km 보험료) − 납입한 (1.가입보험료 + 2.월납보험료)의 합

구 분		가입 보험료	월납 보험료							정산 보험료
납입시점		청약시점	2차월	3차월	4차월	…	11차월	12차월	13차월	12차월 이후
기본료		①	②	③	④	…	⑪	⑫	없음	없음
주행거리 연동 보험료	주행거리	2,000Km (0)	1차월 주행분 (1)	2차월 주행분 (2)	3차월 주행분 (3)	…	10차월 주행분 (10)	11차월 주행분 (11)	12차월 주행분 (12)	잔여 주행분 −2,000Km
	보험료	[0]=2,000 x Km 보험료	[1]=(1) x Km 보험료	[2]=(2) x Km 보험료	[3]=(3) x Km 보험료	…	[10]=(10) x Km 보험료	[11]=(11) x Km 보험료	[12]=(12) x Km 보험료	정산 x Km 보험료
납입 보험료		①+[0]	②+[1]	③+[2]	④+[3]	…	⑪+[10]	⑫+[11]	[12]	정산

《용어풀이》

1. 이 추가 특별약관에서 **가입 보험료**라 함은 이 특별약관 가입 시점에 납입하는 보험료로서 이를 납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퍼마일 보험료 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월정산형)』이 성립됩니다.
2. 이 추가 특별약관에서 **기본료**라 함은 주행거리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적용되는 보험료입니다.
3. 이 추가 특별약관에서 **Km 보험료**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1Km단위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4. 이 추가 특별약관의 **월납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 납입일자에 청구되며, 기본료의 경우 12회분이 모두 납부된 경우에 한해 추가 납입이 없습니다.
5. 이 추가 특별약관에서 **정산 보험료**라 함은 보험 만료 이후에 최종적으로 정산되는 보험료로서 보험기간동안 집계된 주행거리와 가입 보험료 납입 시에 적용된 2,000Km를 감안하여 계산됩니다.

6. **보험기간 만료 시 확인된 보험기간 중 주행거리**라 함은 『퍼마일 특별약관 (월정산형)』 제8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퍼마일 보험료 분할납입 추가 특별약관 (월정산형)』을 가입하는 시점에 가입 보험료를 납입하고, 매월 보험회사가 정한 납입일자에 위 제1항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이 추가 특별약관의 월납 보험료와 정산보험료 납입은 『퍼마일 특별약관 (월정산형)』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3항에 따라 등록된 신용카드 혹은 지정은행계좌로 매월 자동 징수합니다. 단, 정상적인 징수절차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결제가능금액이 청구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포함) 이 추가 특별약관 제4조(보험료의 납입최고)를 따릅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회사는 이 추가 특별약관 제3조(보험료의 산정 및 납입방법)에서 정한 보험료가 약정 납입일자까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보험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정 납입일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기간의 끝나는 날까지 계속하여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는 위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기간까지 납입할 것, 그 기간 안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해지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납입최고를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서면으로 안내할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 장소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납입최고를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해당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⑤ 보험회사는 납입최고를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통신판매시 준수사항) 제3항([부록] 참조)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제5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을 제외한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1. 이 추가 특별약관 제4조(보험료의 납입최고) 제1항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 말일까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② 위 제1항에 의해 해지되는 시점은 납입최고기간 말일의 24시부터 해지됩니다.

제6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추가 특별약관 제5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의무보험을 제외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

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의무보험의 보험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3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② 이 추가 특별약관 제5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의무보험을 제외한 보험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퍼마일 특별약관 (월정산형)』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 및 이 추가 특별약관 계약은 취소합니다.
③ 위 제2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 및 이 추가 특별약관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보험계약은 의무보험에 대해서만 보험의 책임개시일 기준의 연간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는 계약(이 경우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의무보험에 대하여 보험의 책임개시일 기준의 연간 보험료 전액과 보험회사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위 제3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취소로 된 경우 사용 중이던 운행정보 확인장치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가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잔존가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 보험회사에서 회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7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이 추가 특별약관 제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가 환급 되지 않고,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납입해야 할 월납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해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위 제1항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납입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의무보험 외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퍼마일 특별약관 (월정산형),을 따릅니다.

32 퍼마일 커넥티드 카 서비스 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① 이 추가 특별약관은 『퍼마일 특별약관 (월정산형)』 제1조(적용대상)에서 정한 운행정보 확인장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약에 부가하여 적용합니다.
1. 차량 출고 시 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된 장치(휴대전화 등에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제조사와 자동차 보유자가 체결한 **커넥티드 카 서비스**에 의해 운행정보 수집이 가능한 장치로,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는 한 임의로 운행정보 수집을 제한할 수 없는 장치

《용어풀이》
이 추가 특별약관에서 '**커넥티드 카 서비스**'라 함은 자동차와 무선통신 기술을 결합하여 차량상태, 운행정보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송수신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예시) 현대자동차 블루링크, 기아자동차 UVO, 제네시스 GCS 등

② 이 추가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위 제1항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유지된 상태인 경우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커넥티드 카 서비스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조사를 말합니다.)에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하는 등 이 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제2항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동안 피보험자동차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 및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효력이 정상적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운행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7일 이내에 커넥티드 카 서비스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조사를 말합니다.)에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하는 등 이 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제2항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단, 교체(대체)된 자동차가 제1조(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을 따릅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날로부터 잔여보험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퍼마일 특별약관 (월정산형)』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8항을 따릅니다.
2.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날로부터 잔여보험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주행거리 확인을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 사진을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하며, 보험기간 만료 시점 이후 30일 이내에 계기판 사진을 추가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계기판 사진의 송부는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부하여야 합니다.

제3조(운행정보 확인에 관한 일반사항) ① 보험회사는 이 추가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2항에 따른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통해 운행정보를 확인합니다.
② 커넥티드 카 서비스의 개인정보 제공 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등으로 인하여 주행거리가 집계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주행거리는 보험기간 말일 기준 일평균 주행거리와 운행정보가 미집계된 기간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보험기간 만료 시점에 일괄 적용됩니다. 단,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 사진 등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이 추가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기판 사진을 송부한 경우 그 주행거리를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기판 사진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 교체(대체)된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는 보험기간 말일 기준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퍼마일 특별약관(월정산형) 계약의 취소) ① 보험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퍼마일 특별약관 (월정산형)』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이 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 특별약관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이 추가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위 제1항에 의하여 『퍼마일 특별약관 (월정산형)』 계약이 취소로 된 경우 보험계약은 보험의 책임개시일 기준의 연간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는 계약(이 경우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책임개시일 기준의 연간 보험료 전액과 보험회사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① 퍼마일 특별약관(월정산형) 제8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커넥티드 카 서비스**에 의해 수집된 운행정보로 최종 보험료를 계산하여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퍼마일 특별약관 (월정산형)』을 따릅니다.

33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 할인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법인소유 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장착하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 할인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페달오조작방지장치**라 함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거나 저속에서 비정상적으로 가속하는 실수를 감지해 급가속을 억제하고 필요 시 제동을 거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PMSA : Pedal Misapplication Safety Assist)를 말하며, 다음 중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① 차량 출고 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된 장치
②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치
예)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치 : 국토교통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상시 작동시켜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동차의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 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캐롯 자동차보험 업무용 별표와 붙임 목차

※ 별표와 붙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105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 113
〈별표 3〉 과실상계 등 ····· 116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 117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 118
〈별표 6〉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119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 120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 130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나이(연령)"는 사고발생일 기준 만 나이(연령)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지급액: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 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항목	지급 기준
3. 상실수익액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 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 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용어 풀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table>
<tr><th>항목</th><th>지급 기준</th></tr>
<tr><td>3. 상실수익액</td><td>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6)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table>
<tr><th>피해자의 나이</th><th>취업가능월수</th></tr>
<tr><td>62세부터 67세 미만
67세부터 76세 미만
76세 이상</td><td>36월
24월
12월</td></tr>
</table>
</td></tr>
</table>

항목	지급 기준
3. 상실수익액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frac{1}{1+i} + \frac{1}{(1+2i)} + \cdots\cdots\cdots\cdots + \frac{1}{(1+ni)}$ i=5/12%, n=취업가능월수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table>
<tr><th>항목</th><th>지급 기준</th></tr>
<tr><td>1. 적극손해</td><td>(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td></tr>
<tr><td>2. 위자료</td><td>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원)
<table>
<tr><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r>
<tr><td>1</td><td>200</td><td>5</td><td>75</td><td>9</td><td>25</td><td>13</td><td>15</td></tr>
<tr><td>2</td><td>176</td><td>6</td><td>50</td><td>10</td><td>20</td><td>14</td><td>15</td></tr>
<tr><td>3</td><td>152</td><td>7</td><td>40</td><td>11</td><td>20</td><td></td><td></td></tr>
<tr><td>4</td><td>128</td><td>8</td><td>30</td><td>12</td><td>15</td><td></td><td></td></tr>
</table>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td></tr>
<tr><td>3. 휴업손해</td><td>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 풀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산식〉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frac{85}{100}$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70세로 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지급 기준</th></tr>
<tr><td>3. 휴업손해</td><td>〈용어 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td></tr>
<tr><td>4. 간병비</td><td>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 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table>
<tr><th>상해등급</th><th>인정일수</th></tr>
<tr><td>1급~2급</td><td>60일</td></tr>
<tr><td>3급~4급</td><td>30일</td></tr>
<tr><td>5급</td><td>15일</td></tr>
</table></td></tr>
<tr><td>5. 그 밖의 손해배상금</td><td>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td></tr>
</table>

(주) 책임개시 2022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의 경우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위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원)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항목	지급 기준
2. 상실수익액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6)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호프만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3. 가정간호비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지급 기준
1. 수리비용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가)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부득이하게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에는,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가격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나)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2)으로 교환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2) '**품질인증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2) 열처리 도장료 수리 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 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2. 교환가액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3. 대 차 료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항목	지급 기준
3. 대 차 료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4. 휴 차 료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항목	지급 기준
4. 휴 차 료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5.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7. 견인비용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

〈별표 3〉 과실상계 등

항목	지급 기준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 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 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 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 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 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 책임개시 2022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의 경우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위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1)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 **무면허운전**(*2), 마약 · 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1)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 · 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 · 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무면허운전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감액 적용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	보험가입금액		
등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2급	800만원	1,600만원	2,700만원
3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4급	700만원	1,400만원	2,300만원
5급	500만원	1,000만원	1,700만원
6급	400만원	800만원	1,300만원
7급	250만원	500만원	800만원
8급	180만원	360만원	600만원
9급	140만원	280만원	470만원
10급	120만원	240만원	400만원
11급	120만원	200만원	330만원
12급	120만원	180만원	200만원
13급	80만원	130만원	150만원
14급	50만원	80만원	100만원

(주) 1.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책임개시 2022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의 경우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위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보험가입금액			
등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별표 6〉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7조, 8조 위반시 형사합의금 지원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1급	3천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 · 좌창 · 괴사상처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5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2급	1,500만원	10.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관절융기 분쇄 골절, 정강이뼈(경골) 관절융기 분쇄 골절 또는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쇄 골절 12.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2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리 골절은 제외한다) 14.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발목관절의 손상으로 발목뼈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1천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4급	1천만원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위팔뼈목 골절 9. 위팔뼈 몸통 분쇄성 골절 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노뼈 먼쪽 부위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 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손목뼈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목말뼈 또는 발꿈치뼈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팔다리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複視)]으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몸통 또는 하부 몸통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위팔뼈 몸통 골절 7.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5급	900만원	8.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노뼈 붓돌기 골절 10. 노뼈 먼쪽부위 관절 내 골절 11. 손목 손배뼈 골절 12. 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넓적다리뼈 또는 몸쪽 정강이뼈의 견열골절 18.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무릎뼈 골절 21. 발목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24.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손상 25.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6개 이상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팔다리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7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타박상(한쪽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혈액가슴증) 또는 기흉(공기가슴증)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6급	700만원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어깨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위팔뼈 대결절 견열 골절 13. 위팔뼈 먼쪽 부위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외 골절 18. 노뼈목 골절 19.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 20. 자뼈 몸통 골절(몸쪽 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손목손허리뼈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무릎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반달모양)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발목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먼쪽 정강이뼈 · 종아리뼈 분리 28.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1.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2. 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빗장뼈) 골절 6. 어깨뼈(어깨뼈가시,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자뼈 붓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7급	500만원	13.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 15. 손목 부위 손배뼈 · 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 16. 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18.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 23.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3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등의 얼굴 머리뼈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가로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 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손허리뼈 골절 13. 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 사이 또는 먼쪽 손가락뼈 사이 골절 탈구 14.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15. 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무릎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손발가락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팔다리의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팔다리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팔다리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8급	300만원	24. 팔다리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1.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장뼈(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손가락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손가락관절 탈구 12. 무릎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손가락 · 발가락 폄근힘줄 1개의 파열로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팔다리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200만원	1. 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상처(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찢김상처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다리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1. 뇌진탕 2.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11급	160만원	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내 용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얼굴 부위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손 부위, 발 부위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영역		내 용
머리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경막상 · 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머리뼈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 타박상을 말한다. 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사. 두피 타박상, 찢김상처(열창)는 14급으로 본다.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부상 및 질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흉 · 복부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 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장막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척추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팔 · 다리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팔다리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역		내 용
팔 · 다리	공통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아. 관절 분리절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차.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카. 팔다리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팔다리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파. 수술을 시행한 팔다리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선모양)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너. 손발가락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더. "근육(근), 힘줄(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러. 팔다리뼈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팔다리뼈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머. 팔다리뼈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팔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다. 6급의 어깨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동시 확인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영역		내 용
팔 · 다리	다리	가. 양측 두덩뼈가지(치골지) 골절, 두덩뼈(치골) 위아래 가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나. 엉치뼈 골절, 꼬리뼈 골절은 골반뼈 골절로 본다. 다.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발목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마.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 종아리뼈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바. 정강이뼈 후과의 단독 골절 시 발목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사. 엉덩관절이란 넓적다리뼈머리와 골반뼈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고리를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자.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차.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 카.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두덩뼈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관련)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 애 내 용
1급	1억5천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3,5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 애 내 용
2급	1억3,500만원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억2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등골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 애 내 용
6급	7,500만원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4,5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3,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 ·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 애 내 용
9급	3,800만원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2,7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2,3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 애 내 용
11급	2,300만원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2급	1,9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빗장뼈), 복장뼈(흉골),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 애 내 용
13급	1,500만원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1천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주의사항(비고) ♠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팔다리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痺)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